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25
----------	------

2025년 6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5년 5월 26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 라. 상 정 일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6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혜경)

가. 제안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5.1.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조례 일부 조문 삭제(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태 한)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보호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관련 조문***을 삭제(이관)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5.1.1. 시행)

** 선정대리인 사무 이관 : 재무국(세제과)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 선정대리인 관련 본 조례 조문(안 제8조부터 제10조) 삭제

※ 본 조례개정안의 삭제 조문은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이 5월 26일 제출, 6월 13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음.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심부족, 독립성 미흡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2018.1.1.)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바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당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시·도의 경우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담당관실에 배치를 권고하기도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 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 본법」 및 ----- -----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이하 생략)	<삭 제>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이하 생략)	<삭 제>

-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이를 지원
하는 ‘선정 대리인’을 징세를 목적으로 하는 세정부서(재무국 세제과)에서
위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제도 안내·홍보 등에
소극적일 수 있는바,
-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 기획조정실의 ‘납세자보호관’ 사무에 ‘선정 대리인’ 사무를
이관(2025.2.14. 완료)하고 이에 대한 본 조례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25.1.1) 〉

(종전) 납세자보호관 업무(지방세기본법시행령§51조의2)	'25. 1. 1. 개 정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1~4. (현행과 같음)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5. (신설) 지방자치단체 선정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선정대리인 사무 개요 〉

■ (개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지원 제도(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10조)
■ (지원대상)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
■ (선정대리인 현황) 총 20명 (임기 2년: 2024. 3. 2. ~ 2026. 3. 1.) 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11명 ※ 2024.3.2.일 위촉, 시 일괄 관리
■ (선정대리인 수당) 의견서 작성 건당 15만원, 의견 진술 건당 10만원 * '25년 예산액: 1천만원 (의견서 작성 50건×150,000원, 의견 진술 25건×100,000원)

- 한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2020.3.2.) 이후 재무국(세제과)의 '선정 대리인' 운영 실적은 6건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납세자 지원에 있어서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무국 선정대리인 운영 실적(2020. 3. 2. 제도 시행 이후) 〉

(단위: 원)

지원년도	과세금액	쟁송유형	신청인	대리인(자격)	주요쟁점	결과
2023	6,153,49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가산세	기각
2024	7,133,60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상속 1주택	기각
	156,32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장애인 차량	취소
	6,000	이의신청	개인	세무사	주민세	취하
	396,460	이의신청	개인	회계사	상속 취득	기각
2025	5,343,570	적부심	개인	세무사	상속 취득	불채택

※ 2023년 1건 지원, 2024년 4건 지원, 2025년 1건 지원

- 다만, ‘선정 대리인’ 사무의 경우는 줄곧 세정부세에서 운영해 오으로써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는바,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정부서와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 기획조정실의 ‘납세자보호관’ 사무에 ‘선정 대리인’ 직무를 이관(2025.2.14.)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5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정 대리인 업무를 현행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조례 일부 조문 삭제(안 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 02-2133-335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ㄷ”을 “「지방세기본법」 ㄷ”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 기본법」 및 ----- ----- -----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 여야 한다.	<삭 제>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	

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삭 제>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
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
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
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
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
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선정대리인 업무를 이관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비용 발생현황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3)